

#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

소관부서 : 기업경제과

제정 2016· 4· 6 조례 제1223호  
일부개정 2020· 6· 30 조례 제1612호  
(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)  
일부개정 2022· 3· 7 조례 제1814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,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1조의2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노동단체”란 노동자의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2· 3· 7]

**제2조(시장의 책무)**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 기관·단체)**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·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· 3· 7>

1.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
2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·업종·직종별 단위노동조합
3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
4. 이천시 관내 노동관련 단체 및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이천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

**제4조(지원대상 사업)**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·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0· 6· 30>

1.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

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

2.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사업
3. 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, 상담 및 교육사업
4. 노동단체 주관 노동자 체육행사
5. 국내외 노사 정책 연수 및 노동단체간 교류사업
6.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, 노동자의 권익보호,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,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·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신청,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6·30 조례 제1612호, 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3·7 조례 제181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